

신탁재산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에 관하여 변경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소개

2017. 5. 18. 저희법인에서 담당한 부가가치세 취소 사건에서 대법원은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에 관하여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변경된 대법원 판례의 내용 및 그 의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원고는 2008. 6. 24. 쟁점건물을 매수하면서 A은행으로부터 42억 원을 차입하였고, 위 차입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8. 6. 30. 쟁점건물에 관하여 B신탁회사와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를 A은행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쟁점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8. 7. 1. 쟁점건물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B신탁회사 앞으로 신탁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이하 '쟁점신탁'). 원고가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제때에 변제하지 못하자 우선수익자인 A은행은 수탁자인 B신탁회사에 쟁점건물의 환가를 요청하였고, B신탁회사가 쟁점건물의 공개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수회 유찰되자 2009. 2. 23. 수익계약으로 A은행이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쟁점신탁계약의 위탁자인 원고를 쟁점건물의 양도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2010. 1. 원고에 대하여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쟁점신탁은 타익신탁에 해당하므로 쟁점건물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수익자인 A이므로 쟁점건물을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가 모두 A은행으로 동일하여 위 건물에 대한 처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원심 판결의 태도

이에 대하여 원심 판결은 종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4. 25. 선고 99다59290호 판결 등)의 태도에 따라 "신탁계약에서 위탁자 외의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으로 인하여 비용도 최종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어 실질적으로는 수익자의 계산에 의한 것으로 되므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로 봄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후, 쟁점신탁은 타익신탁이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로 인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쟁점신탁의 우선수익자인 A은행이므로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태도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거래세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의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위탁매매나 대리나 같이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신탁법상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한 재산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으로,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

종래 대법원 판례는 타익신탁에서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우선수익자로 보았으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소유자인 위탁자로부터 우선수익자에게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는 시점은 언제인지, 그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는 견해를 표명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세당국은 타익신탁에서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우선수익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은 신탁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 및 처분 등에 대한 권한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때이며, 이 때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에게 신탁부동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타익신탁의 신탁재산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변경함으로써 신탁을 둘러싼 복잡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를 한결 더 간명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법원 판례는 여전히 어느 시점에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이 공급된 것으로 볼 것인지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공급시 신탁재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입장을 여전히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실무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acts

전용희 파트너변호사	TEL. 02 316 4826	E-Mail. yhjeon@shinkim.com
김현진 파트너변호사	TEL. 02 316 4246	E-Mail. hjikim@shinkim.com
이민현 변호사	TEL. 02 316 1639	E-Mail. mhylee@shinkim.com

SHIN&KIM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세종의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s regular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http://www.shinkim.com>